



제1686호
2023. 7. 28.(금)

◇ 발행인 : 종로구청장
◇ 편 집 : 홍보과
◇ 전 화 : 2148-1674

1.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2.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종로구보

【공고】

○ 제2023-984호 공평구역 제15.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 통지 1

공 람										

이 구보는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(<http://www.jongno.go.kr>-행정정보-종로구보)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3-984호

공평구역 제15·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 통지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-55호(2020.5.22.)로 사업시행인가 된 공평구역 제15·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상계획을 열람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통지합니다.

- 아 래 -

1. 공익사업의 명칭 : 공평구역 제15·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2. 공익사업의 개요

- 사업시행 위치 : 종로구 인사동 89번지 일원
- 사업시행 면적 : 시행면적 12,854.1㎡(대지면적 9,263.2㎡, 정비기반시설 3,622㎡)
- 건축면적: 6,188.56㎡(용적률 : 1,037.62%)
- 연면적 : 144,371.94㎡(건폐율 : 66.81%)
- 층 수 : 지상25층 / 지하8층
- 용 도 : 업무시설

3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-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12, 1409호(인사동, 대일빌딩)
- (주)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대표이사 정진용

4. 보상절차 및 방법

가. 보상액산정 방법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.

나. 감정평가업자 선정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나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1인씩 추천할 수 있고, 이 경우 시·도지사나 토지소유자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,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보상대상토지면적의 1/2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.

다. 보상절차

보상계획열람통지 및 공고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→ 손실보상 협의 → 수용재결 (협의 불성립 시) →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

5. 보상시기: 보상평가 후 협의결정 (2023년 10월경)

6. 열람기간: 2023.07.31. ~ 2023.08.14. (15일간)

7. 열람장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2, 1409호(인사동, 대일빌딩)

연락처 02-3789-3535/담당자 :홍석준상무

8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: 열람장소에 비치

9. 기타 : 편입 토지 등의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
바랍니다.

공평구역제15·16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시행자

(주)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대표이사 정진용